

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(약칭: 화학제품안전법)

[시행 2019. 1. 1.] [법률 제15511호, 2018. 3. 20, 제정]

제20조(살생물제품의 승인) 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과학적 실험·분석 또는 연구용 살생물제품
2.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살생물제품
3.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

[시행 2019. 1. 1.] [대통령령 제29412호, 2018. 12. 24., 제정]

제16조(승인 제외 살생물제품)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"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살생물제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제품을 말한다.

1.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살생물제품
2.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(같은 조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, 수입, 판매 또는 사용되는 것만 해당한다)에 사용되는 살생물제품

제5조(적용 범위)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, 수입,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.

1.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
2. 「군수품관리법」 제2조 및 「방위사업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[「군수품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통상품(通常品)은 제외한다]
3. 「농약관리법」 제2조제1호, 제1호의2,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, 천연식물보호제, 원제(原劑) 및 농약활용기자재
4. 「먹는물관리법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(水處理劑)
5. 「사료관리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(單味飼料)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(補助飼料)
6. 「선박평형수(船舶平衡水) 관리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
7. 「식품위생법」 제2조제1호, 제2호,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, 식품첨가물, 기구 및 용기·포장
8. 「약사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,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품외품(醫藥外品) 및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·의약품외품
9. 「위생용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
10. 「의료기기법」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
11. 「화장품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

부칙 <제15511호, 2018. 3. 20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